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28일

남원시 조례 제 1855 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건의
2. 시민의 불편 행정업무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건의
3. 각종 생활 속 개선 사항 건의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임원
3.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8명 이내로 한다.

- 1. 행정복지 분과
- 2. 경제농업 분과
- 3. 안전건설 분과
- 4. 문화·교육체육 분과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2.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소통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분과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28일

남원시 조례 제 1856 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23년	월 1,894,820원
2024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025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026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붙임

현행 별표 2

[별표 2]<개정 2007.12.28, 2008. 12.30., 2014.12.31.2015.11.11.2019. 2. 1>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19년	월 1,798,600원
2020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1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2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별표 3]<개정 2007. 2. 12> 삭제 <2019. 2. 1>

[별표 4] 삭제 <2019. 2. 1>

붙임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사항

- 2023년~2026년 남원시의회 의원 -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 「지방자치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의결사항

- ① 2023년 ~ 2026년 의정활동비 결정
- ② 2023년 월정수당 결정
- ③ 2024년 ~ 2026년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연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비고
2023	1,320만원	2022년도 대비 1.4% 인상 (월 1,894,820원, 연 2,273만원)	2022년 월 : 1,868,660원 연 : 2,242만원
2024	1,320만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	
2025	1,320만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	
2026	1,320만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28일

남원시 규칙 제 721 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용자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용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용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용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용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용자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용자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자기간 만료일까지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용자약정에 따른다.

② 용자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한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용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용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

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용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 수 증 서 (제2조 관련)

□ 금 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탁기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수탁기관 남 원 시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운 용 관 ○ ○ ○ (인)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 약정서 (제4조 관련)

○○○○년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남원시 ○○회계 또는 ○○기금에 용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용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용자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게 용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용자금액 : 금 _____ 원(금 _____ 원)

② 용자금은 실제 용자된 금액으로 하며, 용자금 교부일자에 용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용자조건) 기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____%

다만, 용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____%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____년 거치 ____년 균등분할상환

3. 용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용자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용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용자기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 (인)

수탁기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 신청서
(제4조 관련)

- 1. 사업명 :
- 2. 목적 및 필요성 :
- 3. 신청액 : 금 _____ 원(금 _____ 원)
- 4.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용자금 교부 희망일 :

위와 같이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제4조 관련)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용자금의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28일

남원시 규칙 제 722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 제1호 1-3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7] <신설 2020.12.31.>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제28조의3 관련)

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	가 점	비고
1. 시정발전 유공		
1-1. 기업·기관 유치 유공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가) 투자금액 100억 이상	1.6~2.0	
(나)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3~1.5	
(다) “ 20억 이상 ~ 50억 미만	1.0~1.2	
1-2. 예산절감 기여자 (제도 및 기술개선 등에 의한 경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가) 1억원 이상	0.6~0.7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0.5	
(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0.2~0.3	
1-3. 국·도비 예산확보	0.4~1.0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부여제외 : 신청·심사·선정 등의 과정 없이, 일괄로 매년 또는 당연하게 지원되는 사업		
1-4. 규제개혁 유공자 (중앙부처에서 선정되거나 일부 인용된 경우에 한함)	0.5~1.0	
2. 기관표창 유공자 (중앙단위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서담당, 담당자 중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부여)		
(가) 최우수	0.5	
(나) 우 수	0.3	
(다) 장 려	0.2	
※ 업무담당기간 6개월 초과자에 한함		
3. 정부합동평가 우수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업무담당기간 6개월 초과자에 한함	0.2~0.3	
4. 정부포상 및 적극행정 우수자 (정부우수공무원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자)	1.0	

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	가 점	비고
4-1 남원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가) 최우수 (나) 우 수 (다) 장 려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택 인센티브로 다른 실적 가점과 동일내용으로 중복 불가하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선발)	0.5 0.3 0.1	
5. 우수제안공무원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가) 금 상 (나) 은 상 (다) 동 상 (라) 장려상	0.7 0.5 0.3 0.2	
6. 다자녀 출산 공무원(출산장려정책) (가) 셋째아 출산 (나) 넷째아 출산 (다) 다섯째아 이상 출산 - 2017. 1. 1일 출생자부터 적용 (소급적용 안함) - 부부가 모두 남원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점 부여 - 출생자 및 가점 대상자 모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휴직자의 경우 복직시 신청가능하며 당해기간 실적으로 인정	1.5 2.5 3.0	
7. 서울(장학숙 포함) 및 세종사무소 근무 공무원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0.05점씩 2년 한도에서 부여)	월 0.05	
8. 현안업무 담당 공무원 - 현안업무 담당 선정 등은 자체계획에 의하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업무담당기간 1년 초과자에 한함	3.0	
9. 격무·기피부서 근무 담당자 - 당해 근무평정 기간 근무자에 대하여 매월 0.05점씩 부여 - 격무부서 선정 등은 자체계획에 의하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월 0.05	

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	가 점	비고
<p>※ 실적가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방법</p> <p>◎ 5급, 지도관의 경우 : (예시)최초 3.0점의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 0.5점씩 향후 6개월 주기(근무성적평정 시)로 총 6회 가점 반영</p> <p>◎ 6급, 7급, 지도사의 경우 : (예시)최초 3.0점의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 0.75점씩 향후 6개월 주기로(근무성적평정 시) 총 4회 가점 반영</p> <p>◎ 8급, 9급의 경우 : (예시)최초 3.0점의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 1.5점씩 향후 6개월 주기로(근무성적평정 시) 총 2회 가점 반영</p>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28일

남원시 규칙 제 723 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무장”을 “부단장, 단무장”, “주 4일, 주 15시간 미만”을 “주 5일, 주 40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단원과”를 “전문단원의 연습 및 공연은 주 2회 이상 실시하고,”로 한다.

제8조(단원의 의무)조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위반 시 단장은 남원시립국악단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출연료 징수)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출연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단원의 근무) ① <u>단무장, 사무장, 상임 전문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4일, 주 15시간 미만으로 한다.</u></p> <p>② 비상임 <u>전문단원과 일반단원의 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u>하되, 필요시 단장의 재량으로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예술 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u><단서 신설></u></p> <p>1. ~ 5. (생략) <u><신 설></u></p>	<p>제7조(단원의 근무) ① <u>부단장, 단무장, -----</u> <u>-----주 5일, 주 40시간-----</u> <u>-----.</u></p> <p>② ----- <u>전문단원의 연습 및 공연은 주 2회 이상 실시</u>하고, ----- <u>-----.</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단원의 의무) ----- <u>-----.</u> 위반 시 단장은 <u>남원시립국악단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1조(출연료 징수) <u>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출연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u>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u></p> <p>2. <u>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u></p>

시 보

현 행	개 정 안
	<u>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u>

[별표 1]

농악단 단위 직책 및 정원 (제2조 관련)

직 책		정 원	비 고
합 계		50	
단 장		1	
부 단 장		1	
단 무 장		1	
사 무 장		1	
전문단원	상 임	8	
	비상임	4	
일반단원		34	

[별표 2]

실비보상금 지급표 (제10조 관련)

(단위 : 원)

직 책	실비보상금(월액)	직책수당(월액)	공연수당(1회)	비고
부단장	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	150,000	50,000	
단무장	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	140,000	50,000	
사무장	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	130,000	50,000	
전문 단원	상 임	-	50,000	
	비상임	800,000	-	50,000
일반단원	250,000	-	50,000	

-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상임단원의 실비보상금은 공무원근로자 기본급에 준하여 1호봉부터 확정하되(유사경력에 있을 경우 유사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합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다.
- 비상임단원과 일반단원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보상금을 정액 지급한다.

<유사경력 환산율표>

경 력 구 분	환산율
1. 국·공립예술단체 동일분야에서 상임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동일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유사경력 강사 구분별 환산율 적용
1) 상근강사(정규·비정규직)	100%
2) 비상근강사(시간강사 등)	50%
가. 「고등교육법」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frac{\text{주당 근무시간}}{\text{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3. 군복무 경력	100%

[별표 3] <신 설>

출연료 징수기준 (제11조 관련)

기 준	출 연 료		비 고
	관 내	관 외	
5명 미만	25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5명 이상 ~ 10명 미만	400,000원 이상	800,000원 이상	
10명 이상 ~ 20명 이하	600,000원 이상	1,200,000원 이상	
21명 이상 ~ 30명 이하	1,0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상	
31명 이상	1,5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상	

1.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가 산정
2.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 제공
3. 출연인원 및 추가소요경비 등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립농악단원의 안정적인 생활 및 단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책수당 신설 및 직책별 실비보상금을 조정하여 지원
- 관련조문 :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실비보상)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직책수당 및 직책별 실비보상금 지원
 - 2022년 실비보상금 298백만원(49명)
 - *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상임(8), 비상임(4), 일반단원(34)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298	540	544	546	548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남원시 예규 제 34 호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원시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이하 “CCTV”라 한다)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관리책임관”이란 CCTV의 영상정보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 장비를 말한다.
4.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기록된 당사자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방범 목적이 아닌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공동주택 및 사유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 및 다중주

택,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제4조(위치 및 촬영범위) ① CCTV 설치는 마을 주 진출입로에 한정하되, 필요 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CCTV 촬영 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는 시설물 관리책임관과 영상정보 관리책임관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②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 시설물은 마을 이·통장이 관리하고 영상정보는 읍면동 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설치장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 관리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가 정상 작동되도록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 CCTV 총괄 관리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는 영상정보 관리책임관이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는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설치된 CCTV 녹화기에 저장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한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남원시가 처리하는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관은 영상정보를 열람 및 제공한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그 밖에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2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3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4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5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6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7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8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